

2027.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 신규 대조표

가

초등(사서·상담)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신규대조표

순	관련조항	현행 기준(2026)	개정 내용(2027)
1	제5장 제18조 (교감·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) ③항 <표2> 가산점 평정표	<우우조건> 5. 55세 이상 교사 6.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7. 자녀가 2명인 교사 8. 자녀가 1명인 교사(2026.3.1.전보부터 적용) <개정 2024.7.8.>	<우우조건> 5. 55세 이상 교원 6.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원 7. 자녀가 2명인 교원 8. 자녀가 1명인 교원 (2026.3.1.전보부터 적용) <개정 2024.7.8.>
2	제5장 제18조 (교감·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) ③항 <표2> 가산점 평정표		<근무실적> 21. 최근 4년간 도서·벽지학교 근무 전문상담교사 (6개월마다, 2027.3.1. 이후 실적부터) (0.5점) (4년간 누가 적용)

나

보건(초등)교사 인사관리기준 개정 신규대조표

순	관련조항	현행 기준(2026)	개정 내용(2027)
1	제4장 제12조 (전보 서열 명부 작성) ④항 <표2> 가산점 평정표	<우우조건> 6.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7. 자녀가 2명인 교사	<우우조건> 6.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7. 자녀가 2명인 교사 8. 자녀가 1명인 교사(2027.3.1.전보부터 적용) (0.25점)
2	제4장 제12조 (전보 서열 명부 작성) ④항 <표2> 가산점 평정표	<근무실적> 7. 대규모 학교 근무실적 <개정 2015.5.15.> ○ 36학급 이상, 42학급 이하 근무자 가산점	<근무실적> 7. 대규모 학교 근무실적 <개정 2015.5.15.> ○ 36학급 이상, 42학급 이하 근무자 가산점(2년간)